

승강기 안전관리법 (안) 에 대한 우리의 견해

본 협회는 지난 6월 20일 상공부에서 입법 예고한 승강기 안전관리법(안) 중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설비공사업 면허제도와 상충되는 내용이 있어 이에 건설부와 상공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제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건설부에 제시한 승강기 안전관리법(안)에 대한 의견

법률(안)	의견
<p>제3장 승강기의 설치</p> <p>제14조(설치업의 등록) ①승강기 설치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치업자" 라한다)는 상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자격, 절차 및 방법 등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업자가 그 사업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할 때에는 그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5조(등록의 취소등) 상공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설치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설치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p>○ 승강기설치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이미 제도화 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서 건설업의 규정에 의한 설비공사 중에서 승강기 설치만을 따로 분리하여 상공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기존건설업 면허제도에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됨으로 제14조(설치업의 등록), 제15조(등록의 취소 등), 제16조(등록의 제한)는 새로이 재정할 필요가 없음.</p>

법률(안)	의견
<p>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자격이 정지된 경우</p> <p>제16조 (등록의 제한) 상공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되는 날로부터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때까지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업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p> <p>제4장 점검 및 정비</p> <p>제20조(정비업의 등록) ①승강기의 정비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자(이하“정비업자”라 한다)는 상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p> <p>②제14조제2항 및 제3항,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정비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설치업”은 “정비업”으로, “설치업자”는 “정비업자”로 본다.</p> <p>제7장 보칙</p> <p>제42조 (교육) ①공단은 이 법에 의한 설치, 점검, 정비와 검사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자격자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자격자 <p>제43조 (책임의 한계) 이 법에 의한 설치, 점검, 정비, 검사에 대한 책임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장 벌칙</p> <p>제4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설치업을 영위하는 자 	<p>○ 승강기설치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법 제6조의 규칙에 의거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아 영위하도록 이미 제도화 되어있으며, 이 승강기 설치공사에는 설치 뿐만아니라 유지관리, 정비등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서 별도의 정비업 등록제도는 현행제도 운영에 혼란과 모순을 가져오게 됨.</p> <p>○ 승강기 설치업자는 이미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자가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있으므로, 제4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교육은 건설부에서 실시함이 타당함, 설비공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건설부 산하단체인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음.</p> <p>○ 제42조 제1항 제3조는 별도의 정비업 등록제도가 불필요함으로 삭제.</p> <p>○ 제43조의 내용중 설치, 정비는 삭제</p> <p>○ 현행 건설업 면허제도와 상충됨으로 삭제</p>

법률(안)	의견
<p>5.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업을 영위한 자</p> <p>제4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5. 제14조 제1항(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한 자</p> <p>6. 제14조 제3항(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휴, 폐지신고를 하지 않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사업자</p> <p>부칙</p> <p>제5조 (설치업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승강기 설치를 업으로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p> <p>제6조(정비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승강기를 정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건설업 면허제도와 상충됨으로 삭제 ○ 현행 건설업면허제도와 상충됨으로 삭제 ○ 현행 건설업면허제도와 상충됨으로 삭제

상공부에 제시한 승강기 안전관리법(안)에 대한 의견

주요내용	의견
<p>○ 승강기 설치 또는 정비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대 <p>승강기 설치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 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이미 제도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서 건설업의 규정에 의한 설비공사 중에서 승강기 설치만은 따로 분리하여 상공부 장관에게 등록하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기존 건설업 면허제도에 큰 혼란이 야기되고, 이 승강기 설치공사에는 설치</p>

뿐만아니라 유지관리, 정비 등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서 별도의 정비업 등록제도 또한 현행제도 운영에 혼란과 모순을 가져오게 됨.

참고로 상공부의 승강기 안전관리법(안) 입법예고를 게재한다.

법령안 입법예고

◎ 상공부공고 제90-22호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폭 넓은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법령안입법예고에 관한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90년 6월20일

상공부장관

승강기안전관리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최근 승강기의 설치가 증가되고 있고 승강기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국민이 사용하기 때문에 승강기 안전사고 또는 증가추세에 있어 승강기의 품질보증, 안전시공 및 주기적인 안전점검, 검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승강기의 제조, 설치,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강기의 제작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함.

나. 승강기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 또는 수입되어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그 구조 및 장치가 상공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 및 방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승강기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승강기의 형식에 관하여 상공부 장관에게 승인을 얻도록 함.

라. 승강기설치 또는 정비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마. 승강기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외에 설치완료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아야 함.

바. 승강기 검사업무의 대행과 승강기의 안전 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승강기 안전관리공단을 설립함.

사. 상공부 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진흥청장, 시·도지사 또는 공단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0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상공부장관(참조: 수송기계과장, 전화500-24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법인 기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